



제434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 마련〉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7036호)

2026.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 마련 (안 제4조 및 제15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지연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2. 25.

다. 회 부 일 : 2026. 2.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 통화량 증가 및 유동성 확대 등으로 현금결제환경의 유지·개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화폐제조기반의 개선, 새 은행권 발행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필요, 주화 사용 급감에 따른 폐화폐 처리 문제 등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생산체계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한국은행이 공사에 자본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폐용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화폐 제조기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15조).

Ⅲ. 검토의견

1.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출자 근거 마련

(안 제4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함. <단서 신설> ○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함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u>국고에의 납입</u>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함. <u>다만,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음</u> (안 제4조) ○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처리함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이익의 배당</u> 4. (현행과 같음)

한국조폐공사는 은행권, 주화, 국채, 공채, 각종 유가증권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할 특수제품의 제조(製造)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특히 한국은행의 법정화폐 발권 정책에 따라 은행권 용지 제조·인쇄 등 화폐 제조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일한 기관임.

[법정화폐 발행 과정]



자료: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은 공사의 자본금을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①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② 이익준비금 적립, ③ 국고 납입(정부 배당), ④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의 순서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¹⁾.

[2021~2025년 한국조폐공사 정부 배당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배당액	-	2,116	3,297	3,853	4,785
배당률	-	31.95	49.78	58.17	72.24
배당성향	-	42.00	52.38	53.00	45.00
당기순이익	△415	5,039	6,294	7,269	10,633

자료: 한국조폐공사

주1: 배당률 = 배당액 / 납입자본

주2: 배당성향 = 배당액 / 당기순이익

다만, 현재 정부가 출자한 납입자본금은 1981년 66.23억원에 이른 후 현재까지 추가 출자 없이 유지 중인 상황이고,

최근 디지털 결제수단 확대에 따른 은행권 수요 감소²⁾ 등으로 제지 시설 유지 어려움이 증가함에 따라 제지시설의 이전 및 효율화 등을

1)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填)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

②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1.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
2.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2)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한국은행의 은행권 발주량은 2014년 6.7억 장에서 2024년 3.5억 장으로 축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폐용지 생산량도 10년간 약 77% 감소함(2015년 3,026톤→ 2024년 688톤)

위한 추가 출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정부뿐만 아니라 화폐 발권정책의 주체인 한국은행도 한국조폐공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조설비의 이전과 효율화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화폐 제조기반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현재 한국은행은 법률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누적 출자액은 각각 1.2조원, 1조원임.

은행권용지 제조에 관한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 프랑스 등은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스위스 등은 중앙은행과 조폐기관이 공동출자 형태로 생산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공사의 자본금 150억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되 한국은행이 이와 별도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 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공사의 총 자본금이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금으로 구성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자본금)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은 25조원으로 하고,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수출업자의 단체와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하되, 정부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조(자본금)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한다.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 억원으로 하고, <u>그 전</u> <u>액을 정부가 출자한</u> 다. <u><단서 신설></u>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 ----- ----- --. <u>다만, 화폐 제조</u> <u>등의 안정성과 운영</u> <u>효율화를 위해 한국</u> <u>은행이 별도로 출자</u> <u>할 수 있다.</u>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 -----, <u>정부</u> <u>및 한국은행이</u> ----- --. <u><단서 삭제></u>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 출자 시 정부의 사실상 지배력에는 변화가 없으나, 지분 변동에 따라 국가의 연간 배당수입 감소가 우려되므로 유사 법령 사례³⁾를 고려할 때 배당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3) 「한국수출입은행법」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0조(이익금의 처리) ① 공사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자본의 총액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20을 적립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자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에 따른 적립금 및 제2호에 따른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출자는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화폐제조기반 개선 등 사업을 구체화하여 추진 가능할 때 비로소 출자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자본금 및 출자) 공사의 자본금은 1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단서 신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 ----- ----- <u>. 다만, 화폐 제조 등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한국은행이 별도로 출자할 수 있다.</u>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 1. 2. (생략) <u>3. 국고에의 납입</u> 4. (생략) ② (생략)	제15조(손익금의 처리)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3. 이익의 배당</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60